경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-100호

2026년도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
우정9급(계리)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
최 종 합 격 자 공 고

경인지방우정청 시행 2026년도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 우정9급(계리)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6월 12일

경 인 지 방 우 정 청 장

1. 서류전형 합격자

채용(예정) 직급	응시분야		최종합격자 응시번호
	임용기관	근무예정기관	
우정9급(계리)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	용인우체국	제505군사우편출장소	용인 01
	평택우체국	제800군사우편출장소	합격자 없음

2.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

가. 제출기한 : 2026. 6. 24.(수)까지 우편 또는 방문접수

나. 제 출 처 : 임용(예정)기관 지원과 인사담당

우체국명	전화번호	주 소
용인우체국	031-330-2833	(17019)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73

다. 제출서류

① 기본증명서 1부 ※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모두 기재
②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 ※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모두 기재
③ 주민등록초본 1부 ※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모두 기재
※ 병적사항 및 주소변동이력 포함 발급(전체)
④ 최종학력(재학・휴학・졸업・재적)증명서 1부
※ 졸업증서 사본이나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도 가능함
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(서식1) ※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모두 기재
⑥ 우체국 통장 사본 1부
⑦ 경력증명서 1통(해당할 경우) ※ 공무원 경력 및 호봉 산정 시 필요
⑧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(해당할 경우)
⑨ 증명사진(반명함판) 2매

3. 유의사항

가. 합격자의 임용 시기는 인력 상황에 따라 바로 임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임용시기・절차 등은 인사담당자가 별도 통보 예정

나. 공무원 임용을 위해서는 신원조회 결과 임용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,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, 기타 채용하기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

다.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안내를 받지 못함으로써 임용 등에 차질이 생겨 합격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전화, SMS, 개인메일 등 상시 연락망을 유지하여야 함

라. 채용시험에서 인정되는 근무경력과 호봉책정 시 인정되는 '유사경력'은 인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, 경력요건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책정 시 해당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
마. 기타 임용에 관한 사항은 근무예정기관 우체국으로 문의

【서식 1】

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24. 12. 3.>

(앞쪽)

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구 분	② 시험실시기관	③ 응시직명	④ 응시번호	⑤ 성 명		사 진 (3.5㎝ × 4.5㎝) ※ 압인 또는 계인
⑥ 검사 시						
⑦ 재사용				⑧ 주민등록번호		

검 사 내 용

키		cm	체 중		kg
허리둘레		cm	혈 압		
(교정)시력	좌: ( ) 우: ( )	색 신 (색 각)		(교정)청력	좌: ( ) 우: ( )
종 양 질 환			이비인후질환		
호흡기질환			심혈관질환		
소화기질환 (간 질환 포함)			신장/비뇨기계질환		
내분비질환			혈 액 질 환		
신 경 질 환			피 부 질 환		
근골격계 질환			안 질 환		
정 신 질 환			흉부X선 검사		
기 타					

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.

년 월 일

검사자(담당의사) (서명 또는 인)

검사 결과 합격 여부	[ ]합 격 [ ]판정보류	합격 사유	
판정보류 사유 (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)	*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		

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검진기관의 장 (서명 또는 인)

유효기간	판정일부터 1년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

유의사항 및 작성방법

[응시자]

1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
   가.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.
   (예: 인사혁신처, 국세청 등)
   나.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.
   (예: 9급 세무직, 7급 전기직 등)
   다.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.

2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[주민등록증(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), 운전면허증, 여권 등]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

   ※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[검진기관]

1.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(押印: 도장을 눌러 찍음) 또는 계인(걸침도장)을 해야 합니다.
2. "검사 내용"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.
   가. 검사 결과 기재의 예: 질병명(심부전증, 백혈병, 척수종양 등)을 적거나 "정상", "양호", "이상 없음"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.

   ※ 필수사항: 질병이 있는 경우 "합격" 또는 "불합격"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.

   ※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   나. 임산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.
   - (작성 예시) 임산부인 경우 "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"라고 적습니다.

3. "검사 결과 합격 여부"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[]안에 "√"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.

   ※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.

   가. 합격 사유 기재의 예

   - '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' 에 해당하지 않음
   -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
     (예시: '만성골수성백혈병' 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(官解)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)

   나.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

   -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(예시: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)

   ※ 응시자의 질환이 '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' 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.

4.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야 합니다.